조 문

1.

2. ( , )

| . 「  |      | , [ ] 4 ( |                | ) 5 '        |
|--|------|-----------|----------------|--------------|
| 36 ( ) 36     14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가.     1)       2)     3)       4)     가)       .     , |      | ٦         | 3 1            | 가            |
| 변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3.  71.  1)  2)  3)  4)  가)  . ,   |      | ,         |                |              |
| 3.<br>7.<br>1)<br>2)<br>3)<br>4)<br>7ト) , , , , , , , , , , , , , , ,  | 36 ( | ) 36      |                | 14 .         |
| 7t.  1)  2)  3)  4)  7t)  . ,  |      |           |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              |
| 1) 2) 3) 4) 7h)  |      |           |                |              |
| 2) 3) 4) 7h) , ,   |      |           |                |              |
| 3) 4) 7h)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가  |      |           | ,              |              |
| ) , · 가  | )    |           |                | <del>.</del>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가  |   |   | 2 (      |    | 가  |
|--------|--------|-----------|----|----|---|---|----------|----|----|
| ) 2009 | 8      |           |    | 71 |   |   | ? (      |    |    |
|        | 7      | <b></b> ₩ | 1  | 가  |   |   |          |    |    |
| 甲      | 가      |           |    |    |   |   |          | 가  | 가  |
| 甲      | 가      |           | 가  |    | 가 |   | ē        |    |    |
| 甲      |        |           | 가  |    |   |   |          |    |    |
|        | -1     | Z         |    |    |   |   | 가        |    |    |
| 甲      | 가<br>가 |           | 가가 |    |   | 甲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甲  |    |   |   | 가        |    |    |
|        | •      |           |    |    |   | 가 | 가        | ,  |    |
|        | -<br>가 |           |    |    |   |   | <u> </u> | 가  |    |
|        |        |           |    | 가  |   | 가 | _        |    |    |
| ×      |        |           |    |    |   |   | 甲        | 가  | 가  |
| ^      |        |           |    | 가  |   |   | т.       | 71 | 71 |
|        |        |           |    | 가  |   |   |          |    | 가가 |
|        | 甲 기    | (         | )  |    |   |   |          |    |    |

2. [ 18] ( 1992. 9. 22, 91 8289) 가 , 1 가 220cc , 1 가 1 220cc 2 1 , 1 1 , 1 18] ( 53 [ ) ), 12 15 ( 3 ), 10 ( 1 3 , 3 2 10 3.5 ( ), 2 ), (

(125cc

)

: 1.

|    | 14 [ ]         | 11 | <u>가</u>           |
|----|----------------|----|--------------------|
|    |                |    |                    |
|    |                |    |                    |
| 1. | 가 85           |    | • ( )              |
|    | 11 【 가】        | 1  | 가 가                |
|    | ·              |    |                    |
| 7  | <u>34</u> , 35 | 43 | <u></u> <u>가</u> ・ |

대통령령(○○법 시행령) ─ 위임명령(법률의 위임) ─ 집행명령(직권)

총리령·부령(○○법 시행규칙) ─ 위임명령(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 집행명령(직권)

2.

- (1) 지방세법 제110조 :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990년 2월 1일 제정)
-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991년 2월 1일 제정)
- (3) 지방세법 제110조 :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장의 기준은 행정안전<u>부령으로 정한다</u>. (1992년 2월 1일 개정)

3.

- (1) 법령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시장이 甲에 대해 밤 12시 30분에 음식점에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
- (2) ① 식품위생법 제70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령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밤 12시 넘어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甲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령 제10조를 취소하라(취소소송)

③ 시장 - 甲

4월 1일 - 6개월 영업정지처분(1월 10일 12:30 A 주류 판매)

甲 - 시장

6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여성가족부 공무원행동강령 [여성가족부훈령 제128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여성가족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2(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인사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 6.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과징금 부과기준)** ②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7.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1. 상반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2. 하반기 : 매년 9월 30일까지
-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o.   |   |   |  |  |  |
|--|---|---|--|--|--|
| 식품위생법[법률]  |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  |  |  |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임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 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 |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br>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br>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br>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기: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2) 조리장 3) 급수시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한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 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  |  |
|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u>허가를 받아야</u>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4 - 케이스 프 케이스 - 티디어 시프로그  |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u>제출하여야 한다.</u>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u>법</u>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  |  |  |  |
| 는 <u>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u>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 야 한다.<br>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   | 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br>[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  |  |  |
|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   | 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 행정처분기준  |  |  |  |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을 <u>위반</u> 한 경우 (이하 각호 생략)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총리령으로 정한다</u> .   | 영업소 폐쇄 처분   | 위반사항 법령 1차 2차 3차<br>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  |
|  |   | 법 법 영업 하가 기소 영업 영업 기가 생기가 기소 영업 영업 기가 생기가 기차 이 기가 기차 기가 기가 기차 기가  |  |  |  |
|  | <u> </u>  |   |  |  |  |

① 형식(법규명령) 내용(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 대통령령(○○법 시행령) □ 부령(○○법 시행규칙)

② 형식(행정규칙)

내용(법규명령)

- 훈령, 고시 등

-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u>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가 정하는</u>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가 고시하는</u>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진정서

사 건 : 2023 고1011

피고인 : 김 00

진 정 인 : 박 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 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연락처 : 000 - 0000 - 0000

진정취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이유

피고인은 평소 … ….

2023. 10. 11.

진정인 박 0 0

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귀하

## 진정서

사 건 : 영업허가처분 취소 청구

진 정 인 : 박 00

주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피진정인 : 동작구청장

진정취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2023. 2. 1.자 영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진정이유

진정인은 평소 … ….

2023. 4. 1.

진정인 박 0 0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 행정심판청구서

사 건 : 영업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박00

주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피청구인 : 동작구청장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인 동작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23. 2. 1.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청구인은 평소 … …

2023. 4. 1.

청구인 박 0 0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gong.conects.com

4.

## 행정심판청구서

신 청 인: 박 OO

주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이의신청 대상처분 : 동작구청장의 2023. 2. 1.자 영업허가취소처분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평소 … …

신청인 박 O O 동작구청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6.

01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 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 ×) 2018 경행경채 3차

: 0

02 행정심판청구서의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았다면 비록 그 문서 내용이 행정심판의 청구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 ×) 2012 사회복지직 9급

: ×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학사제명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②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 ③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 <해설>

① ○ 송유관매설허가(엄밀하게는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에 해당한다)를 하면서 사후에 시설이전이 있을 경우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정지조건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먼저 조건과 부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부담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위 사안의경우 부관의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송유관매설허가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므로 조건으로 볼 여지는 없다(정지조건의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한다).

#### $(2)(3) \cap (4) \times$

-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판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②).
-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u>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u>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u>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소멸하는 것은 아니다(④).</u>
- 3.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③)(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0 국가직 9급

- ①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②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u>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u>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u>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u>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대판 1994. 3. 8, 92누1728).

② ○ 법정부관의 경우 부관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u>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u>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대판 1994. 3. 8, 92누1728).

3.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 ④ 2. ②

###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 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 ①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 ②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 ③ 丙이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④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 <해설>

① ○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 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납부한 부담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甲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 11. 8, 2001두3181).

② ×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도 미치므로 乙에게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기타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급효가 인정된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u>헌법재판</u>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

해 사건(동종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다른 한 가지의 불소급원칙의 예외로 볼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라고 할 것으로, 이때에 소급효의 인정은 법(편저자 주 :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 본문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 ③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므로 丙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며. 丙의 사건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하므로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u>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u>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u>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u>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위헌결정 후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1.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2. <u>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u>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대판 2002. 8. 23, 2001두2959).

```
1.
甲
    Γ
                                                      )
                                      ) ل
                                                                              Α
                                                      甲
                                 ? (
                                                            ) 2022
      ]
       42
                        1
                                                      가
                                  1
                                                                              가
   43
                                         42
       ]
                                       43
                                             1
   55
                      500
  甲
                   甲
                   甲
       甲
  甲
                                                                        ,甲
  甲
                                         Α
                                                 甲
<
                                              가
   ×
 가
                     Γ
                                                           38
                                                                 2
                                                                           2017. 6.
 15, 2014 46843).
```

× 20

3 [ 가 가 \_\_\_\_\_ 가 가 가 가 가 2017. 6. 15, 2014 46843). 甲 × 2006. 2. 10, 2003 5686). × 26 甲 20 1 • 3 • 4 1993. 11. 23, 93 16833). (

```
36 (
                                    )
                                                       (
                                                                    3
                                                                    가
                                                            )
            30
              1
                                                                  14
                                                              14
                                             10
     1
           ( 2
                                   )
                                         90
     1
               5
1.
                                                가
2.
     가
                      30
3.
                  2
                       2
4.
5.
6.
```

```
(
         37 (
                         )
            가
                                    가
1.
                                             가
2.
                        가
                                              가
3.
              451
                                                                           가
    1
               1
                         가
                            1
                                                        60
    1
                   5
```

```
90 (
        180 )
                                      (
                                                                    90 (
                  )
    180 )
                                                                           90 (
            180 )
             18
                                 19
              6
1.
2.
                     2
3.
4.
5.
6.
```